

가정법률상담

통권505호

2025

09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 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 객배희 소장은 지난 8월 15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에 국민대표 80인 가운데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에게 '법률구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직접 작성한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관련 기사 34번)



가족의 정신 건강과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동지 교실' 이 황순찬 교수(인하대학교)의 강의로 지난 8월 13일 본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주제로, 성격장애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관련 기사 35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부패를 끊고 신뢰를 잇다.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심포지엄 ③
- 22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⑩
- 23 • 가정폭력상담실
- 26 • 어떻게 할까요
- 30 • 좋은 책
동급생
- 31 • 실무수습 소감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8 • 소송구조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

그 빛의 하나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상담소 70년의 역사 인정 받아

‘자기 나라의 차를 타고, 자기 나라의 스마트폰을 쓰는 나라, 고유한 워드 프로그램과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국산인가, 수입품인가 선택의 문제이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이나 포털 사이트 등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최근 흥미로운 보도를 자주 접합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서 세계의 남녀노소들에게 신드롬 급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영화에 수록된 노래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무려 네 곡이 한꺼번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른바 케이(K) 컬처, 한류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퍼져 소프트 파워에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인 7위에서 10위 사이에 있으며, 국방력 순위는 6위 정도라고 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더욱 대단한 것이 대중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아카데미, 그래미, 에미상, 토니상 부문의 수상자를 모두 배출한 나라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가고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근대 개화기의 혼란을 거쳐 일제 강점기 이후 80년 만에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동족상잔을 겪고 분단을 남긴 한국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80년 만에 세계 문화사의 한 획을 긋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취의 근간에는 무엇보다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일군 경제적 성취와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사회의 민주화가 있고 그 기틀에 가정의 민주화가 있습니다. 1956년 문을 연 상담소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빛나는 현대사에서 법률구조의 중심으로 우뚝 서서 가족법상 남녀차별, 부부차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폐지를 이루어냄으로써 가정 내 민주화의 기틀을 다졌으며, 사회상의 변화와 더불어 남녀평등, 부부평등을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소가 스스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각계각층에서 공유해온 인식이며 광복 80년 기념식 행사에서 공식화된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주제로 국민주권 대축제 및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제21대 대통령에게 국민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사에는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과 새로운 성장산업, 과학강국, 문화강국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이웃,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애쓰는 일꾼 등이 특별초청’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모든 바람을 담아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거행하면서, 임명장 수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맡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장으로서 그 80인의 한사람으로 참석했습니다. 제가 국민대표로 추천된 사유는 “호주제폐지 등 가정 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80년, 상담소 창립 70년을 한 해 앞두고 열린 이 뜻깊은 행사에서 우리 상담소가 호주제폐지의 주역이며 이를 통해 가정 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그리고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묵묵히 노력해 온 지난 시간이 세간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렇듯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최

선을 다하니 역사가 이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남녀차별, 부부차별을 극복하고 동성동본 금혼 철폐에서 호주제폐지, 이혼숙려제도, 가족관계등록법, 양육비 선급제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위한 법의 개정과 제정에 상담소가 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자리매김 되었기에 이번 광복 80년,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상담소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적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력, 치안, 의료, 기술, 교육, 문화 등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발전의 뒤편에 있는 삶의 질과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저출산 문제 등을 비롯해 지나친 경쟁사회를 견뎌내기 위해 개인이 겪는 과부하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라는 말로 수식되는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듯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출생아 수가 12개월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혼인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우리 사회와 가정이 얼마나 급격한 변화 아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한편으로는 가족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마찰의 증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상담소는 그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우리 사회의 가정, 가족구성원과 지금까지 함께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만 상담소가 민간단체로서의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민간단체라는 태생적 한계를 빌미로 오히려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민간단체로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끈끈하게 버텨온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우리 사회에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집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③*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과제

주제 ③

호주제의 잔재, 자녀의 성과 본

송 효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제781조는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민법에 ‘명시적’으로 남아 있는 성차별적인 조항이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父)의 성(姓)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부모가 협의하여 모(母)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거나(동조 제1항 단서), 그 이외에 모(母)의 성(姓)을 따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동조 제2항 이하)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부성우선주의 하에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를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송효진, 2018: 38).

I. 서론

1. 호주제 잔재로서의 민법 제781조 - 부성우선주의 원칙

호주제가 폐지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부계(父系)중심의 가부장제의 잔재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 자의 성과 본의 결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

* 지난 5월 23일 본소 강당에서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호주제폐지 이후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과 혼인의 변화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과제를 점검하여 미래 가족법의 대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 개의 주제와 그에 따른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세 주제와 토론을 연재하여 이번 호에 마지막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실는다. 지면 관계로 참고문헌은 제외하였으며,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https://www.lawhome.or.kr>)에서 볼 수 있다.

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위선주·배은경(2013:75)은 우리 법제에 유지되고 있는 부성우선주의에 대하여 “이는 단순히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을 물려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계 가족의 정상성을 다시금 강화하고 어머니의 지위를 부차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가족법제가 ‘가부장제 가족’을 탈각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위선주·배은경, 2013:52).

2. 민법 제781조 연혁

민법 제781조는 민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연혁에 따라 살펴본다.

민법 제정 이후 1997년 개정 전까지의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는 것으로 부성주의 원칙과 호주제가 결부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분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하여 호적을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자녀가 누구의 성분을 따르는가는 누구의 (호)적에 입적하는가와 결부된다. 부성우선주의는 부계·남계 혈통 우선의 호주제도와 강하게 결부되어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의 성을 따르는 것과 모계 호적에 입적하는 것, 또는 성분을 창설하는 것은 부의 호적에 입적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이다.

[제정 이후 1997.12.13.개정전]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는 1997년 개정이 있었는데, 부성우선주의의 예외 사유로서 부가 외국인인 때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하는 내용을 제781조 제1항 단서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997.12.13. 개정]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개정 1997. 12. 13)
-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005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민법 제781조가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시행 2005. 3. 31.)되어 현재 이르고 있다. 당시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대표적인 성차별 규정으로 개정 요구가 컸던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폐기되지 못하고 일부 개정에 그치고 말았는데, 2005년의 민법 제781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81조에서 자의 입적 관련 내용은 호주제의 폐지로 삭제되었다. 동조 제1항 본문의 부성우선주의는 그대로 유지하여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개정의 핵심내용은 부성우선주의를 소위 ‘완화’하여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자녀

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민법 제781조 제6항)

개정 이후 현행 민법은 호주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가부장적 부계혈통의 표지로서의 부성우선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성주의를 완화하여, 혼인신고시 협의하여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녀의 성분 변경이 가능해졌으나, 한계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¹⁾

II. 민법 제781조의 문제 및 개선 필요성

1. 성(性) 차별적 규정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는 부계와 모계를 차별하여 부계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성(性) 차별적 조항이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가치(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다.

또한 민법 제781조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에 반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의 개정을 촉구해오고 있으며, 최근 2024년 우리나라의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여 해당 규정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표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의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일부 발췌

CEDAW CEDAW/C/KOR/CO/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의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52.위원회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이 부성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음에 여전히 우려한다. 해당 규정은 호주제를 폐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혼 당시 남편이 동의를 해야만 자녀가 부인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있다.(이하 생략)

53.위원회는 당사국이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여 해당 규정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하 생략)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24.6.3.),
대한민국의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781조 제1항 본문의 부성우선주의 원칙 자체가 성차별 조항임은 물론, 2005년 개정으로 혼인 시에 자녀의 성분을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나, 성차별 요소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모의 성을 따르려면 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부의 동의 즉,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 결국 원칙인 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성차별적이다. 그리고 혼인시에 자녀의 성·본을 미리 결정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는 사실상의 절차적 장벽이라는 점에서 2005년 개정의 한계이자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서 혼인신고 시에 자녀의 성·본 결정을 협의할 수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성우선주의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2013년 및 2018년 심포지엄 자료집은 <https://lawhome.or.kr/webbook/20131114/index.html> 및 <https://lawhome.or.kr/webbook/20180511/index.html> 참조.

있는 기회를 법에서 주고 있으나, 아직 자녀를 임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 시 위와 같은 예외적인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없다(박복순·송효진·전경근·현소혜 2013:218).

2.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에 대한 차별 문제

부계 성·본의 강요는 사실혼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 가족, 동성애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가족들이 출현하고 지속되는 것을 지양하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양현아, 2018:25).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은 '다른' 가족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차별한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획일적인 가족 구성 형태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양현아, 2018:25).

민법 제781조 제2항 이하에서 모(母)의 성(姓)을 따르는 예외적인 경우는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나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즉, 비혼 출산 등 한부모 가족, 국적이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들은 부성 원칙을 따르는 이른바 '정상'가족과 구분되는 표식으로서의 성(姓)이 부여되는 효과를 제도가 만들어 줌으로써 구분과 차별을 강화시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다(박복순·송효진·전경근·현소혜 2013:217). 모의 성을 사용하는 자녀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결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가 모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비우호적인 호기심과 편견'²⁾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이다(송효진 외 2018: 41). 제도가 차별을 낙인을 부여하고 차별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가족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성우선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에 대한 차별의 문제로서, 자녀 인지의 경우 및 친양지 입양 파양의 경우 자녀 성·본 결정의 문제도 지적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인지의 경우 부성 원칙으로 인해 현행법에는 자녀의 성을 결정할 당시 부를 알 수 없어 예외적으로 모의 성을 사용한 경우라도 부를 알 수 있게 되면 이 과정에서 부모의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부의 성으로 변경되며,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민법 제781조제5항)(송효진 외, 2018: 48). 또한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에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는 친양자 파양의 효력(민법 제908조의7)³⁾으로 인하여 친생부의 성으로 변경되며, 종전의 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성분 변경 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송효진 외, 2018: 48). 즉, 부성 우선의 원칙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자녀, 친양자입양 자녀는 인지나 파양시, 종전 성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별도의 절차는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자녀의 복리보다는 부성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성분 결정 과정에서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확립된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시정이 요구된다(송효진 외, 2018: 49).

3. 개인의 존엄성과 성명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

성명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신분과 혈통, 가문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권리와 기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송효진 외 2018: 39). 다양한 성·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문제이기 이전에 개인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다(현소혜, 2018:56). 자녀의 성(姓)의 결정의 문제는 이제는 개인의 존엄성과 성명권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성(姓) 변경에 대한 기회와 권리도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

2)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https://ecourt.court.go.kr/main/guide/view/caseAsk.do#n> 접속일: 2025.5.1.)

3) 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부활한다.

선될 필요가 있다.

III. 관련 개정 입법 및 정책 동향

가. 헌법재판소

2005년 개정전에 헌법재판소에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 제청이 있었는데, 결정은 2005년 법 개정 후인 2005년 12월 22일에 선고된 바 있다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조항은 2005년 개정 전 민법 제781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였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다만 헌법불합치 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 간 상이한 의견들이 있었으며, 부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불합치 이유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부성주의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다”고 한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는 살피보는 바와 같은 문제를 오늘에 이르러 한 2005년 개정 민법 조항의 한계와도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의견을 달리하는 재판관 2인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성주의는 부(父)와 남성(男性)을 중심으로 한 혈통 계승을 강제하여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놓게 하여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치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놓이게 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 그

리고 그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정당한 입법목적은 찾을 수 없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성을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면서도 그와 같은 부성 사용의 강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인정하였다.

위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78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5년 호주제폐지 미 민법 제781조 개정 이후에 선고된 것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유에 대한 다수의견이 부성주의 원칙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고, 2005년의 개정 민법 역시 부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 사건이 2021. 3. 2. 접수⁵⁾되어 계류 중이다.(2021헌마262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

나. 정부

정부 차원에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및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 부성우선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의 개정을 포함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자녀의 성(姓)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 및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는 경우 종전 성(姓) 사용 원칙 확립(「민법」 제781조 제5항 개정)”을 위해 민법 제781조 개정을 검토하는 것을 과제에 포함하였다.⁶⁾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역시 민법상 자녀 성(姓)

4)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https://ecourt.court.go.kr/main/guide/view/caseAsk.do#n> 접속일: 2025.5.1.)

5) 여성신문(2021.3.16.), “아빠 성 우선주의는 기본권 침해”… 낡은 가족제도 흔드는 94년생 여성, 출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02> 접속일: 2025.5.1.)

6) 여성가족부(2021.4.27.),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1-22면.

결정 시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부모 협의로 전환 (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 결정권자 지정 등)하는 내용을 과제에 포함하고 있다.⁷⁾

법무부는 2020년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

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⁸⁾한 바 있다.

다. 국회

민법 제781조의 개정을 위한 최근의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된 법안이 없다.

〈표 2〉 21대 국회 발의 민법 제781조 개정안

의안번호	21대 국회 발의 민법 제781조 개정안
<p>의안번호: 2102999</p> <p>발의연월일: 2020.8.14.</p>	<p>제781조(자녀의 성과 본)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p> <p>②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지 못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본문의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p> <p>③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한다.</p> <p>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p> <p>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p>⑥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p>
<p>의안번호: 2104403</p> <p>발의연월일: 2020.10.6.</p>	<p>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p> <p>〈삭 제〉</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의안번호: 2108609</p> <p>발의연월일: 2021.3.8.</p>	<p>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는 첫 자의 출생신고시 성과 본의 협의 결과를 명시한다.</p> <p>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p> <p>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접속일 2025.5.1.)에서 검색

7) 대한민국 정부(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59면.

8) 법무부(2020. 5. 8), 보도자료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면

IV. 외국 입법례

선행연구에서의 비교법적 검토(송효진 외, 2018: 25-27)에 의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서구의 가족성-부부의 혼인성을 강제하는 제도는 이미 개선되었고, 부부 별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부 별성을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자녀의 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이슈로 자녀의 성 결정 이슈가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자

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방식, 결합성 등을 사용하는 방식 등의 입법례를 살펴볼 수 있다. 아시아권의 사례로서 중국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부와 모의 성을 각각 따르게 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성 결정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호적사무소가 추첨하여 결정하게 하는 점도 흥미롭다. 인용한 국가들 모두 자녀의 의사에 기한 성 변경이 자유로운 것도 시사점이 있다.

〈표 3〉 자녀의 성(姓) 결정 관련 외국 입법례

국가	자녀의 성(姓)에 관한 주요 내용
독일	<p>■ 법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혼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의 성(姓)은 부모의 혼인성(독일 민법 제1616조) - 부모가 혼인성이 없는 경우(부부별성), 부모가 공동양육권 행사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으로 정함(독일 민법 제 1617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성 부여 결정권을 행사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기한 내에 자녀 성(姓)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정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의 성이 자녀의 성(姓)(독일 민법 제1617조 제2항). <p>■ 부부의 성(姓): 혼인성 / 부부별성, 결합성(가능)</p> <p>■ 자녀의 성(姓): 부모의 혼인성, 부 또는 모의 성</p> <p>■ 자녀 성(姓) 결정 시점: 출생신고 시(첫 번째 자녀).</p> <p>■ 자녀 성(姓)에 관한 협의가 안 된 경우: 불합의인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p> <p>■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자녀는 첫 번째 자녀의 성(姓) (자녀동성(同姓))</p> <p>■ 자녀의 의사에 기한 성(姓)변경 가능 여부: 가능</p>
프랑스	<p>■ 법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부, 모, 또는 부의 성(姓)과 모의 성(姓)을 당사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조합한 성을 자녀의 성으로 선택(프랑스 민법 제311조의 21 제1항) - 친자관계가 부모 중 일방에 대해서만 성립된 경우 자녀는 친자관계가 먼저 성립한 부/모의 성을 취득(프랑스 민법 제311조의 23 제1항) -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 두 번째 친자관계가 성립된 때에는 그 부/모는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에게 공동신고에 의하여 친족관계가 두 번째로 성립된 부모 일방의 성으로 변경하거나, 부모 각각에 대해 하나의 성만을 부모가 선택한 순서로 하여 두 개의 성을 병치하는 것을 선택(프랑스 민법 제311조의23 제2항) <p>■ 부부의 성(姓): 부부동성, 부부별성, 결합성 가능</p> <p>■ 자녀의 성(姓): 부의 성, 모의 성, 부와 모의 성의 연결 성(결합성) 가능</p> <p>■ 자녀 성(姓) 결정시점: 출생신고 시(첫 번째 자녀).</p> <p>■ 자녀 성(姓)에 관한 협의가 안 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성(姓)에 대해 신고가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친자관계가 먼저 성립한 부/모 성(姓), 친자관계가 부모 동시에 성립된 경우에는 부(父)의 성을 선택. <p>■ 부모가 불합의인 경우: 친자관계가 부모 동시에 성립한 경우 자녀는 각각 부모의 성(중복성인 경우 첫 번째 성)을 알파벳 순으로 결합한 성(姓)을 취득</p> <p>■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의 자녀1인에 대해서 먼저 승계하거나 선택된 성은 공동의 다른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자녀 동성(同姓))</p> <p>■ 자녀의 의사에 기한 성(姓)변경 가능 여부: 가능</p>

국가	자녀의 성(姓)에 관한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규정 -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거나 모의 성을 따를 수 있음(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22조) ■ 부부의 성(姓): 부부별성⁹⁾/부부동성도 가능¹⁰⁾ ■ 자녀의 성(姓): 부 또는 모의 성 ■ 자녀 성(姓) 결정시점: 출생신고 시 ■ 성(姓)에 관한 협의가 안 된 경우: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정 없음¹¹⁾ ■ 자녀의 의사에 기한 성(姓)변경 가능 여부: 가능¹²⁾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규정 - 부모는 자녀의 성(姓)을 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성 중 누구의 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출생등기 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함.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 사무소가 추첨으로 정함.(대만 민법 제1059조 제1항)¹³⁾ ■ 부부의 성(姓): 부부별성¹⁴⁾ ■ 자녀의 성(姓): 부 또는 모의 성 ■ 자녀 성(姓) 결정시점: 출생등기 전 서면 약정 ■ 성(姓)에 관한 협의가 안 된 경우: 호적 사무소가 추첨으로 정함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정 없음 ■ 자녀의 의사에 기한 성(姓)변경 가능 여부: 가능

출처: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비혼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7면.

V. 쟁점의 검토

1.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기준

가. 자녀의 성(姓) 결정의 원칙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기준의 원칙은 현행의 성차별적인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 또는 모의 성 중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성평등 가치와 변화된 가족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2013년과 2018년에 한 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의 대안으로 ‘부모 협의’와 ‘부모결합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201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자 중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75.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부모 성의 결합성의 사용, 즉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3: 74-75). 한편, 2018년도 조사에서는 ‘부성우

9)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16조(송효진 외, 2018:27에서 재인용)

10) 이은정(2003, 155-156)(송효진 외, 2018:27에서 재인용)

11) 자녀 별성 가능한 것으로 보임(현소혜, 2018:57)참조.(송효진 외, 2018:27에서 재인용)

12) 자녀는 성년에 달한 후 부모가 결정한 성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부성도 모성도 아닌 제3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다고 최고인민법원은 해석하고 있다(이은정, 2003, 155-156)(송효진 외, 2018:27에서 재인용)

13) 중화민국 민법 제1059조 ① 부모는 자의 출생등기 전에 서면으로 자가 부의 성이나 모의 성을 따를 것인지를 약정하여야 한다.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사무소가 추첨으로 이를 정한다.; 김성수(2011, 24)(송효진 외, 2018:27에서 재인용)

14) 第一千條 (夫妻之冠姓) 夫妻各保有其本姓。但得書面約定以其本姓冠以配偶之姓，並向戶政機關登記。冠姓之一方得隨時回復其本姓。但於同一婚姻關係存續中以一次為限(송효진 외, 2018:27에서 재인용).

선주의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자 중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는 응답은 71.2%로 역시 가장 높게 나왔는데,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는 응답이 22.3%로 2013년도 조사결과 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 83-84). 현재 최근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지만, 호주제폐지 운동 전후로 지금까지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등 결합성을 사용하는 사례가 사회문화적으로는 낯선 현상은 아니다.

결합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이슈는 성명권, 자유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성(姓)을 결정함에 있어, 부 또는 모의 성으로 할 것인지, 결합성으로 할 것인지 등 보다 선택지를 자유롭게 더 허용 해주는 방향이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 성의 결합성(중복성) 또는 제3의 성도 선택지로 둘 것인지의 이슈 등 적극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선택지들은 성(姓)의 의미가 가문의 표식에서 개인의 성명권,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의 변화된 가치와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방식을 모두에게 원칙으로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의 결과가 다수의 양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선택지를 열어두어 성(姓) 결정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결론에서의 개선안은 부 또는 모의 성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인용하여 제시하지만, 결합성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입장을 같이 하고자 한다.

나. 부모 협의로 정할 수 없는 경우 자녀 성(姓) 결정 기준

자녀의 성을 부 또는 모의 성(姓) 중 협의로 정한다고 하

면,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성(姓)의 결정 기준이 문제된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에서 독일의 사례와 같이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녀의 성(姓)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안이 갈등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송효진 외 2018: 44).¹⁵⁾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평등을 강요하여 유지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송효진 외, 2018: 45). 또 한편으로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할 경우 판단기준을 정해야 하는 어려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두면 ‘자녀의 복리’라는 명목 하에 부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현소혜, 2018:58), 가정법원의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하라는 내용과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현소혜, 2018:59)는 지적이 있다(송효진 외, 2018: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사법부의 고유 기능이라는 점에서, 결국 가정법원으로 가져가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협의불성립시 부성우선원칙이 다시 등장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결합성 등으로 바로 지정하는 방식은 개선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¹⁶⁾ 자녀의 성 결정 과정에서 법원까지 가게되는 경우 출생신고의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데, 다만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으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고, 자녀의 성(姓) 결정 이슈 뿐 아니라 자녀의 출생신고 서식에 있어 기재가 바로 되기 어려운 부분, 법원의 결정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예컨대 법률상 부(父)의 결정 등) 그

15) 독일의 경우 자녀의 성(姓)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성(姓)부여의 결정권을 행사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1617조 제2항)

16) 프랑스의 입법례는 자녀의 성(姓)에 대해 신고가 없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친자관계가 먼저 성립한 부/모 성(姓), 친자관계가 부모 동시에 성립된 경우에는 부(父)의 성을 선택한다(프랑스 민법 제311조의21 제1항). 부모가 불합의한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부모 동시에 성립한 경우 자녀는 각각 부모의 성(중복성인 경우 첫 번째 성)을 알파벳 순으로 결합한 성(姓)을 취득한다.(송효진 외, 2018:26)

사항의 기재를 유보하고 출생신고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자녀 성(姓)의 결정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자녀들의 성은 동일하게 정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자녀들의 성을 다르게 정하는 것으로 허용할 것인지를 쟁점이 있다.¹⁷⁾

가족성 내지는 부부의 혼인성(Ehename)과 부부 별성(別姓)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의 경우, 모두 첫째 자녀의 성(姓)을 둘째 이하의 자녀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송효진 외, 2018: 46).

우리나라는 가족성 또는 혼인성의 전통이 없으며, 부부 별성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는 가족 전 구성원이 같은 성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¹⁸⁾ 자녀의 성을 부계혈통을 표시하는 것으로서의 전근대적인 기준 원칙을 폐지하고 부부가 평등하게 자녀의 성(姓)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부부 사이의 자녀들이 모두 같은 성을 지녀야 한다는 원칙 역시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자녀들의 성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예도 있다. 입법 기술상, 자녀들의 성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않는 한, 자녀가 출생 시 자녀 성(姓)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면, 자녀 출생시 성명을 지을 때 각각 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재혼가족 등 다양한 결합가족의 증가로 자녀들의 성이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 규정 두어 또 하나의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의 구분을 제도에서 강화하는 방식은 가족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도

라. 인지, 파양 시 종전 성(姓) 계속 사용의 원칙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 제781조 제5항 및 민법 제908조의7은 자녀의 인지 및 파양시 종전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 성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방식과 절차를 거쳐야 해서,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체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송효진 외, 2018: 49)

마. 성(姓) 변경의 자유 보장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姓) 변경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자녀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성명권의 보장”이라는 측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관점을 변경하여, 미성년든 성년이든 자녀의 의사-성(姓)을 사용하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태어날 자녀의 성을 부모의 협의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는 법 개정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비할 수 있어, 부성주의 원칙 하에 성을 부여받은 성인들에게도 성(姓)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차별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성원칙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개인의 존엄을 보장받는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

17)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는 혼인신고서 협의서 제출에 있어서 자녀 별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4조 (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④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8) 또한 김주수·김상용(2024, 29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같은 부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혼인신고서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 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위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혼에서 태어난 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랐으나, 후혼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신고서의 협의에 의하며 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18호 제3조 참조”.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송효진 외, 2018: 50). 성명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감안하여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없고 성과 이름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성명 변경’을 함께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송효진 외, 2018: 50).

2. 자녀 성(姓) 결정 시점

- 혼인신고사에서 출생신고시로 개선

현행 민법은 출생신고 시 사용하는 자녀의 성과 관련하여 모의 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혼인신고 시에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을 둘 필요가 없다(송효진 외, 2018: 50).¹⁹⁾ 즉 개선의 요지는 자녀의 성 결정은 출생신고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3. 본(本)을 법에서 규율 할 것인지의 이슈

우리 민법은 자녀의 성(姓) 뿐만 아니라 본(本)도 법적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성씨(姓氏) 문화의 존중라는 측면도 있으나,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 및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지속 가능하게 했던 호주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법 상 “본(本)”이라는 개념을 규정할 필요성은 사라졌다(송효진 외, 2018: 41). 불변이던 성 또한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자의 성·본 변경)이 규정되어 현재 본이 갖는 의미는 많이 퇴색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본은 족보 상의 성·본과 일치하지도 않는다(송효진 외, 2018: 41).

본(本)은 단지 법적 효과의 무의미성을 넘어 사생활 침해나 차별의 기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성·본을 창설하여야 하는 기아(棄兒)의 경우 실익 없는 본의 공시가 당사자 개인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송효진 외, 2018: 42)이 지적되기도 한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모든 증명서에는 본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본이 예를 들어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처럼 익숙한 본일 경우는 본의 공시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은 약합니다.

그러나, 기아(棄兒)의 경우는 시읍면의 장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하게 되어 있고²⁰⁾ 이 경우 본은 통상 지역으로 정하는데 안양 김씨, 도봉 이씨 등으로 기아가 발견된 장소 등으로 본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소해서 의아할 수 있고, 혹시 기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추측할 개연성이 있는 본이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든 증명서에 공시가 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오영나, 2018: 101-102(송효진 외, 2018: 42에서 재인용))

전통문화로서의 족보 상의 본(本)은 유지하더라도 법적 규율대상으로 남아 있는 민법 상의 본(本)은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현곤, 2013:107)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 다만, 자녀들은 같은 성(姓)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둔다면, 첫째 자녀의 출생신고 시 등 기준점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발제에서는 자녀들 성은 각 출생시에 정할 수 있고, 자녀들간 다른 성을 정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20) 가족관계등록법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VI. 개정 방안

이상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송효진 외, 2018: 117-118, 123-126)은 다음과 같다.

부성우선의 원칙은 폐지하고,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 출생신고시에 부 또는 모의 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²¹⁾ 본(本)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규율 대상은 아닌 것으로 한다. 자녀의 성(姓) 결정에 있어 부모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자녀의 성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그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지 못하면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을 자녀의 성으로 한다.

자녀의 인지, 파악시 종전 성(姓)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모의 협의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성(姓) 변경 기회를 확대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확대한다.

〈표 4〉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
<p>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p> <p>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p> <p>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p> <p>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p> <p>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p> <p>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p>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p>	<p>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p> <p>제781조(자녀의 성) ①자녀의 성은 부 또는 모의 성 중에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자녀의 성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그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지 못하면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을 자녀의 성으로 한다.</p> <p>②〈삭제〉</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신고시 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자녀의 성으로 할 수 있다.</p> <p>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창설한다.</p> <p>⑤자녀가 인지된 경우, 성을 정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친양자 파악의 경우 자녀는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하되,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모의 협의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p> <p>⑥자녀의 성은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성 변경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를 “자녀”로 변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기 쉽고 성평등한 용어로 변경함(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순화 기준에 따름) ● 본(本)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동본금혼제 폐지 및 호주제 폐지로 본(本)을 법적 개념에 포함시켜 공시할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성분을 창설하여야 하는 기아의 경우 본의 공시가 사생활침해의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으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함. ●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여 자녀의 성 결정을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출생하면 자녀의 성(姓)을 부 또는 모 성 중에서 부모의 협의로 정하게 되므로, 별도로 기준시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 매 자녀의 출생신고시 부모가 협의하게 되므로 별도 규정 없이 자녀 별성(別姓)이 가능함. ● (제2항) 자녀의 성 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제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비혼자녀에 대한 차별적 표현일 수 있으므로, 용어를 순화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신고시 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 명시하여 이 경우 자녀 성의 결정 기준을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제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자녀의 성 결정 기준을 규정함 ● (제5항) '혼인 외의 출생자'의 용어를 삭제하여 규정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자녀의 성을 정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및 친양자 파악 시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1) 결합 성(姓) 또는 제3의 성(姓)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에 반영은 하지 못하였음.

현행법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항) 성 변경 기회를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필요 요건을 규정한 현행과 달리, 자녀의 복리 요건에 구속받지 않고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성 변경 기회를 확대함. 다만 자녀의 성변경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 민법은 ‘자녀의 성·본 변경’청구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 모, 또는 자녀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그동안 성·본이 가져왔던 혈통의 계승이라는 의미의 약화와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외적인 청구 주체로 친족 또는 검사를 규정하지 않음.

출처: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비혼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17-118면에서 일부 발췌하여 인용함.

〈표 5〉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생략)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이하 생략)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생략)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이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本)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음. -동성동본금혼제 폐지 및 호주제 폐지로 본(本)을 법적 개념에 포함시켜 공시할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성분을 창설하여야 하는 기아의 경우 본의 공시가 생활침해의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으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함.
제52조(기아) ①~②(생략)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2조(기아) ①~②(생략)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本)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음.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이후 자녀의 성을 변경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5조제1항제4호) 인지사 종전 성 사용 원칙으로 변경하는 「민법」 제781조제5항 개정안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
<p>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p> <p>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p>	<p>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p> <p>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 변경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p>	<p>1.</p> <p>●본(本)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음.</p>
<p>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p> <p>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p> <p>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p> <p>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p>	<p>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p> <p>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p> <p>3. <삭제></p> <p>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p>	<p>●「민법」 제781조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단서를 삭제하여 규정하고자 함</p> <p>●본(本)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음.</p> <p>●(제3호)「민법」 제781조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3호를 삭제함.</p>
<p>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종전의 성</p> <p>2. 창설한 성·본</p> <p>3. 허가의 연월일</p> <p>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p>	<p>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종전의 성</p> <p>2. 창설한 성</p> <p>3. 허가의 연월일</p> <p>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p>	<p>●본(本)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음.</p>
<p>제12절 개명 및 성(姓)·본(本) 변경</p>	<p>제12절 개명 및 성(姓) 변경</p>	<p>●본(本)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음.</p>
<p>제100조(성·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변경 전의 성·본</p> <p>2. 변경한 성·본</p> <p>3. 재판확정일</p>	<p>제100조(성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의성립일 또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서 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변경 전의 성</p> <p>2. 변경한 성</p> <p>3. 협의성립일 또는 재판확정일</p>	<p>●본(本)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음</p> <p>●성변경 신고로 종전 성 변경 협의(민법 제781조제5항) 및 성변경허가(민법 제781조제6항)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p>

출처: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비혼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23-126면에서 일부 발췌하여 인용함.

토론문

“호주제의 잔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토론

박인환

인하대 법전문 교수

송효진 박사의 발표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의 신설로 혼인신고시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민법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조항으로 그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한 시간 관계상 토론의 요지만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민법 제781조가, ①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민법에 ‘명시적’으로 남아 있는 성차별적 조항으로(1면), ② 부성우선주의가 부계·남계 혈통 우선의 호주제도와 강하게 결부되어 작동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2면), ③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민법 제781조가 성차별적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781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임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시에 예외적인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없다고 지적하며, ④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민법 제781조가 성차별적인가에 대하여,

적어도 민법 제781조에 대한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다수의견은 부성주의 그 자체는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위배되지 않고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부의 성을 강제하는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남계혈통을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족 문화적 요소로서,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 부의 성을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의 성 대신에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 곧바로 법적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법 제781조 단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드물거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계·남계혈통주의적 관념과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다만, 민법 제781조의 구조가 성차별적 가족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은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자녀의 성(姓)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 및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는 경우 종전 성(姓) 사용 원칙 확립(「민법」 제781조 제5항 개정)”을 위해 민법 제781조 개정을 검토하는 것에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부성주의에 의한 자녀의 성 본 결정을 호주제도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합니다. 저로서는 이 부분에 선뜻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주제가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것인 한 부성주의와의 결부는 당연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운동이라는 역시적 맥락에서, 호주제는 조선 시대 이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가족에 대한 신분적 지배라는 봉건성과 일본식 가제도에 의한 우리 가족제도의 왜곡으로서 일제 식민 지배의 잔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방 이후 한국 가족법의 민주적 개혁과제로서 인식되었던 역사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과연 봉건성 내지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관점에 따라 부성우선주의를 봉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아직도 부성우선주의를 취하는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봉건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성우선주의와 호주제를 연결하는 것

은 호주제 폐지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과학적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 설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셋째, 발표자께서는 혼인신고 시에 예외적인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시에 협의가 안 되었는데, 자가 출생할 시점에 더 잘 협의가 될 것이라고 불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자의 출생을 전후하여 성과 본의 결정에 관하여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원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모를 지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한 자녀를 공동 양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와 모 둘 사이에 누가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원이 찾아 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발표문에는 독일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자녀의 성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결정하는지 그 척도가 소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소개가 보충된다면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녀의 성과 본은 혼인신고시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후에 발생할 분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넷째, 발표자께서는 성(명)이 가지는 의미는 신분, 혈통, 가문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권리와 기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적어도 성과 본은 가족(부계혈통)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표식으로서 발생하여 온 것임에 틀림 없으므로 발표자의 주장은 성의 기능을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통적 성 제도는 남성(부)가 생산활동을 하고 여성(모)이 자녀를 양육하는 전통적 가족내 기능분담 가운데 부가 자신의 자원을 자녀에게 전적으로 투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여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자녀 양육의 자원을 전적으로 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더 이상 남계혈통을 나타내는 상징 장치인 자녀의 성에 대하여 양보할 마음이 없어진 것도 당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관점에서 자녀와의 유대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가 자신의 성을 남기지 못한 자에 대한 자원 투입에 소극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혼인 기피).

또는 성명이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권리와 기능'이고 '개인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면 부 또는 모가 일방적으로 성을 부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무모의 자에 대한 성 결정은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남성의 시각을 대변하는 토론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안하는 개정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2분의 1이나 되는 반대의견을 가진 결정권자의 시각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제2장 민법 초안에 드러난 불평등적 요소 (6)

3. 불평등한 입법안에 대한 적극적 대처

법사위의 수정안이 발표된 후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전개해 온 활동 방향을 급선회해야만 했다. 신민법 제정에 대한 국회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동안은 국민계몽과 여론조성으로써 국회의원들에게 간접 압박을 가하였지만, 국회의 입장 역시 헌법 이념에 맞지 않는 남녀 불평등한 입법이라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성문제연구원 및 대한부인회 등을 비롯한 여성계는 우선 1957년 10월에 여성단체들의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민법 제정에 제하여 국회의원 제위에게 호소함’이라는 제목의 이 호소문은 친족상속편 개정의 핵심적 쟁점인 ‘호주제도 폐지’와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 ‘친권행사의 부모공동주의’ 등을 주장하는 한편, “남존여비의 생활관습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호소문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59~61쪽 참조)

또한 당시 황신덕이 원장으로, 이태영이 이사로 있던 여성문제연구원은 단독으로 ‘민의원 의장에 대한 민법 제정

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기봉 민의원 의장 앞으로 된 이 청원서는 ‘헌법에 보장된 당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써 별첨 의견서와 함께 제출되었다.(청원서는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61~65쪽 참조)

이로써 민법 제정을 위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활동은 막을 내렸고, 여성계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후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2005년까지 5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악법 개정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편집부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상담위탁 중 피해자 발병, 행위자는 피해자의 치료를 우선시하기로 하고 상담 과정에서 큰 위로 얻었다고 밝혀

2021버3*** 상해 / 2021버3*** 특수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5회,
집단상담 4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5회 등 총 22회

상담기간

2022. 5. 24. ~ 2022. 12. 19.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24년이 경과하였고, 2남(23세, 21세)이 있다. 아내는 결혼후 13년 동안 원거리와 경비문제 등을 이유로 명절에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하면서 이후 시가에 가기를 거부해 왔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나 2022년부터 방과후 교사로 일하며 포토샵도 운영한다.

2021년 9월 사건당일 지방에 사는 아내의 언니 집에 가던 자동차 안에서 아내가 라디오를 듣다 코딩이 어렵냐고 질문하자 남편은 늘 하던 '아이씨'를 하며 말다툼하다 아내가 이제는 참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술병을 뒷좌석 유리창으로 던져 금액 미상의 술병과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남편은 아내 얼굴을 1회 때려 타박상으로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부부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

며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갈등원인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어폭력과 음주문제를 꼽았다. 남편은 아내의 가사 소홀과 경제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카드값을 갚아나가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면서 상담에 대한 바람으로 아내가 경제적, 가정환경적, 현실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아내는 이혼을 고려중이라고 하면서 자녀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였다.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바라는 것을 제시해보도록 하자 1) 말하기 전에 5번 생각하고 말할 것 2) 충분히 설명할 것 3) 본인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 것 등을 제시하였는데 남편은 이를 수용하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였다.

부부는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였지만 부부관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만족도를 사건 당시에는 마이너스 점수, 종결상담시에는 0점으로 평가하였다. 남편과는 지금 처럼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갈등을 촉발하지 않을 것이며, 1년 전부터 시작한 사진작업에서 수익은 창출되지 않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므로 향후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남편은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부부상황을 이해하는 좋은 경험을 하였고, 아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대화는 많지 않지만 미래에도 이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아내가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 바랐다.

2022버8*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0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4회(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16회

상담기간

2022. 6. 16. ~ 2022. 12. 16.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5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5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1년 12월 사건당일 육아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경찰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이전에는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신체폭력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사건당일 피곤하여 아이를 봐주는 것이 힘들기에 유튜브를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너 또 맞고 싶어?'라고 말하기에 이번에는 남자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신체적 폭력을 하였다고 하였다. 본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행위자를 때리고 할퀴어 피가 난 적이 있고 이혼도 고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고 행위자가 이혼가정에서 자랐기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화해하였다.

행위자는 결혼하고 처가에 잘했고 부친도 사돈집에 음식선물을 하는 등 매우 잘했는데 장모가 피해자에게 결혼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고 처가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처가에 근 1년간 가지 않는 상황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에 참여하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

화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재인식하였다. 대화법을 점검하고 실천과제로 폭력대화 하지 않기(특히 비난과 담쌓기 하지 않기)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등을 부과하였는데 말조심 덕분인지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상담 중반기에 행위자가 폭우 피해를 입은 처가의 집을 잘 보수해 준 후 처가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고 섭섭했던 마음이 많이 풀렸으며 이후 처가에 왕래하고 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상담을 받고 온 날 특히 변화하려는 태도가 관찰되었고, 욕하는 정도와 횡수가 줄었으며,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다고 하고, 행위자와의 관계만족도를 사건당시는 0점, 상담종결시는 10점 만점에 6점으로 평가하였다. 보완점으로는 행위자의 육아참여를 꾀았는데 지금도 육아에 참여하지만 가끔 힘들다며 전혀 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 꾸준히 육아에 동참하기를 바라기에 행위자와 이를 공유하고 실천 다짐을 받았다.

행위자는 종결상담시 피해자와의 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고 보완점으로 대화법 개선을 꾀았다. 행위자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폭력 대화(비꼬는 말투)를 가끔 한다고 하면서 이를 더욱 개선하기로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3***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4회
(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음주문제상담 4회(화상으로 실시)

등 총 14회

상담기간

2022. 7. 6. ~ 2022. 12. 2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지 14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8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1년 10월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오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 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피해자는 태국에서 5년간 살다가 한국 방문 중 행위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영, 스쿠버 등을 좋아하고 엄청 활동적인데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21년 12월에 팔이 아파 검사한 결과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다. 피해자는 팔을 쓰지 못하게 되어 모든 가사를 행위자가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물론 행위자도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발병에 많이 놀랐지만,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행위자는 그동안 피해자가 시가에 잘 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부부상담을 받기 원하였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피해자의 치료 다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치료는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지 완치는 없다고 하여 행위자는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상담에서는 행위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행위자가 일상에서 쌓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행위자는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 좋았고, 부부 사이 갈등은 결국 이해하고 대화하고 서로 위해줌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에게 마음의 균형추를 잃지 말고 피해자를 돌보며 심신을 잘 관리하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5년 8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8/6	17명	관계의 정석, 살다가 생기는 별난 일들	
		8/13	18명	관계의 정석, 사칙 연산 부부	
		8/20	15명	관계의 정석, 별일 아니야	
	8/27	16명	관계의 정석,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동지교실		8/13	77명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어떻게 할까요



친 권 ①

● 미성년 자녀의 자에 대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대행한다

Q 문 1 | 미성년자인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딸이 미성년이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에 대한 친권을 제가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아이의 친권자는 생모인 딸이 되겠지만(민법 제909조 제1항)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법 제910조에서 규정하는 친권의 대행에 따라 딸의 친권자인 귀하가 딸에 갈음하여 손주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 친권은 부모가 같이 행사한다

Q 문 2 | 결혼한 지 13년 되었는데 요즘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12살인 제 아들 명의로 집을 사 주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재산관리권은 저와 남편 중 누구에게 있나요?

A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동법 제909조 제2항).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데(동법 제916조),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를 그 재산의 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귀하만 관리권을 갖게 됩니다(동법 제918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해야 합니다(동법 제912조 제1항).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생모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문 3 | 남자와 교제하여 아이까지 출산하였으나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등록부에 저와 생부가 부모로 되어 있는데 남자가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산 후 계속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양육하고 싶은데, 이 아이에 대한 친권이 생모인 저에게도 있나요?

A 혼인 외 자의 경우 생부의 인지를 받기 전에는 생모가 친권자가 되지만, 인지가 된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 데 협의를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귀하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5 제46조).



● **친권자에 대해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Q 문 4 | 남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시가에서는 이혼하면 아이에 대한 친권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아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제가 아이의 친권자로서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이혼 시 귀하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귀하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

을 청구해야 합니다¹⁾(가사소송법 제46조).

● **이혼 소송을 하면서 친권자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Q 문 5 | 이혼 소송 중에 저와 남편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친권자는 누가 되나요?

A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 **친권자 변경은 가능하다**

Q 문 6 | 몇 년 전 협의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자로 전남편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권자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46조).

1)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필요한 서류 :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심판청구서, 기본증명서(미성년 자녀 1통),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 부모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표등(초)본(미성년 자녀, 부모 각1통), 기타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

●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자녀를 유기한 경우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다**

Q 문 7 | 형부가 2년 전 가출하여 언니가 조카와 어렵게 살아 오다 형부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언니는 무직인데다 재산도 없어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형부로 했습니다. 이혼 후 조카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하여 조카를 만나러 갔더니, 형부가 조카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이모인 제가 보육원을 수소문하여 조카를 어렵게 찾았는데 형부는 오히려 제가 법을 어겼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언니는 지방에서 취업을 하여 이모인 제가 조카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따라서 귀하는 아이 아버지가 자녀를 유기한 사실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함을 입증하여 이를 변경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언니로 변경되면 친권자인 언니의 동의를 받아 이모인 귀하가 조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Q 문 8 |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저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어머니가 저의 친권자가 되는 것인지요?

A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친권자지정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의2 제4항).

● **친권자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 혹은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

Q 문 9 | 몇 5년 전 이혼 후 아이를 혼자 양육하던 사촌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연락이 두절되어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일이 없고 사촌동생의 사망사실조차 모를 것 같은데, 아이의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A 이혼 시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생존친의 친권자지정청구가 기각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Q 문 10 | 단독 친권자였던 아이 엄마가 사망하였는데, 아이의 친부인 제가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시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친이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였으나 가정법원에서 생존친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4항).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저는 현재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와 단절되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니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빚을 많이 남겼는데 고모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다 해결된 줄만 알고 아무런 법적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빚을 다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A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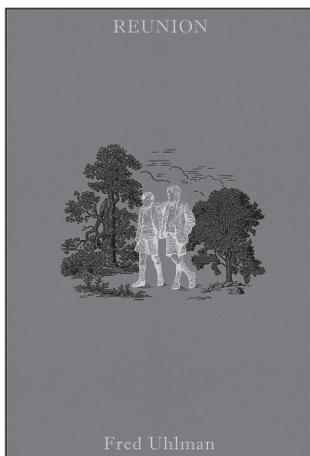
박효원 상담위원



동급생

프레드 울만 지음
황보석 옮김

열린책들, 2024(특별판 1쇄)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과 우리나라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생각했다. 또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갔던 할아버지의 묵호 관사도 생각했다. 특이한 방바닥과 방문 - 나중엔 엄마가 적산가옥이라고 말해 주었다. 알고 보니 다다미 바닥이었던 것 - 할아버지 사무실에서 본 향구의 배, 따뜻한 봄날의 묵호 골목길 - 지금 ‘묵호’는 동해시로 합병되어 이름도 동해시 묵호동이 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와 비행기를 탔는데 누군가 파란색 작은 가방에 비스킷을 가득 채워주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그 파란 가방에 체크 줄무늬가 있었던 것까지 생각한다. 어린이는 대단히 좋았던 것이다. 때로 묵호의 그 봄날이 너무 그리워서 간절하지만 가보지는 않는다. 그 시간은 이제 없기 때문이고 그날들은 내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추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서 차와 마들렌을 먹으며, 기억을 찾아가는 폴의 추억과 조금 비슷할까, 박완서 작가의 고향에 대한 추억과는 다르다. 전쟁과 분단으로 잃은 것, 빼앗긴 것,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추억은 따뜻하지만, 칼날 같은 아픔이 녹아 있다. 거기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 의사의 아들인 열여섯 살 한스 슈바르츠는 전학생 독일 귀족 소년 콘라딘 폰 호엔펠스에게 이끌린다. 서먹한 약속로 시작된 두 사람의 우정은 슈바벤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점점 깊어져서, 두 사람은 예술과 철학, 그리고 신에 대해 토론하며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고 가끔은 여자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책 『동급생』을 읽으며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 주인공이 잃어버린 것, 다시는 찾을 수 없이 빼앗긴 것들이었다. 전쟁의 참혹함이란 이런 것에 깊이 남아 있다. 전쟁으로 빼앗기는 것이, 그 시간에 겨우 살아 남은 사람의 삶에 남기는 참혹함이 무엇인지 깊이 보

여준다.

유대인과 독일 귀족이라는 대비에서처럼 한스의 아버지는 한스의 친구에게 공손히 “백작님”이라 부르고 콘라딘의 어머니는 아들 친구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혐오하고 그것을 감추지도 않는다. 이런 차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정은 쌓여 간다. 하지만 이들이 사는 거리에는 유대인을 비난하는 포스터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표지가 늘어난다. 학교에도 아리아인 우월주의를 신봉하는 역사 교사가 새로 부임하는 등 점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돈다. 1933년, 한스의 부모는 한스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한다. 독일을 떠나기 이틀 전 한스는 콘라딘으로부터 안타까운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30년이 흐른다. 한스는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사춘기 때 꿈이었던 시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한다. 평소 독일에 대해 잊으려 애썼던 한스는, 어느 날 뜻밖의 방식으로 콘라딘과 ‘재회’하게 된다.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의 시대를 다룬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 널리 읽히는 책의 하나인 『동급생』이다.

지은이 프레드 울만은 화가이자 작가로 활동했으며 『동급생』이 그의 대표작이다. 1901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중산층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히틀러가 집권한 후 1933년 독일을 떠났다. 『동급생』에는 자전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서전은 아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카를 알렉산더 김나지움은 작가가 다녔던 에버하르트 루트비히 김나지움에 근거했으며 학교 풍경과 선생님, 아이들 역시 작가의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프레드 울만은 자신을 예술가로 만들어 주고 평생 “낭만적”으로 살게 한 것은 자신의 고향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모국어는 영어가 아닌 독일어지만, 『동급생』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영어로 쓰였다고 한다.

이숙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본소에서 실무수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이 소 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각 층에는 '인류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은, 이 슬로건의 의미를 체화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형태의 사회이자 인간이 접하는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해체와 갈등은 개인의 존엄성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삶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절실하며 법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가사법의 주요 법리와 절차를 익히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실무수습 과정에서 참여한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 상담(라오니 모임), 상담소 및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상담 참관, 사이버상담 실습, 법률구조의뢰서 작성, 소장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실제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면서, 법적 쟁점 너머의 감정과 현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당사자들은 법적 분쟁과 더불어 감정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분쟁이 해소된 이후에도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적 보상을 우선으로 추구하다 보니 소송을 권리 실현의 수단이 아닌 감정 해소의 도구로 오해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가 감정에 치우쳐 불합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판단을 돕고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상담 위원님들과 변호사님들께서는 내담자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감정적인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으며, 소송의 실익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감정 속에서 법적 쟁점을 정확히 추출하고 상담의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가사사건을 다루는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섬세함과 전문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나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접하면서, 이들을 돕는 데 법률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절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서적 지지, 정보 접근성, 경제적 자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법조인에게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법학도로서 이론적으로만 접해왔던 가족법을 실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법률구조'가 단지 법률적 조력을 넘어 개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였고, 상담소가 지향하는 '가정의 평화가 곧 인류의 평화'라는 가치에 다시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은 공익적 가치관과 실무적 시야를 함께 길러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정 채 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동안 스스로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 과만 어울리게 되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접수실에서 나온 내담자가 저에게 “이거 다 사생활 아닌가요? 문 좀 닫으시죠”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화를 내시는 걸까? 본인이 직접 닫으셔도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며 문을 닫았지만, 이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 ‘차라리 직접 닫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았을까?’ 하고 곱씹었습니다.

그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는 이후 가정법원 민원실을 참관했을 때였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재산목록 보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신 내담자가 “피성년후견인은 상속받은 것이 없는데, 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멋쩍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었지만, 내담자가 나간 뒤 부장님께서 법리를 설명하시며 “그렇네,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할 수 있겠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상담실 상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간에서는 문이 열려 있을 경우, 내담자가 스스로 닫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수성이란 결국, 타인의 입장과 맥락을 짐작해 보려는 태도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내담자가 법률상담을 받으러 와서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리상담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 경로를 찾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심리상담소와 변호사 사무실이 가까이 위치한다면 두 기관 간의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특히 사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내담자라면, 심리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젠가 변호사가 되어 제 사무실을 차리게 된다면, 인근 심리상담소와 연계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실습하며 교류할 수 있었던 점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담위원님들과 변호사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실습을 이끌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줌을 통한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대면상담,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상담, 화상상담,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참관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 채 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작년 가족법 수업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1년에 걸쳐 상속, 혼인, 입양 등 가족법에 대한 법리를 익힌 만큼, 그 법리가 활용되는 실제 현장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 반, 짧지 않은 2주의 시간을 그래도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다는 꽤 기특한 마음 반으로 무턱대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흔쾌히 긍정의 답을 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덕분에, 소중한 인연과 값진 경험을 쌓아갑니다.

매일 다른 경험을 하고 저마다의 사연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떤 단순한 소감으로 정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몇 가지를 한번 나열해 볼까 합니다.

첫날의 야간상담부터 종합민원실 출장 상담까지 정말 많은 상담을 참관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원인은 참 단순하게도 여섯 가지입니다. 내담자의 몇십 년 인생은 소장에서 각호 사유에 덧붙여지는 두세 마디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사실 이게 내담자를 돕는 법조인이 해야 할 역할임을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그 문장 하나에 증

명되기 어려운 개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제 귀와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는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조언 하면서도, 부드럽게 듣고 표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미래 법조인으로서 익혀야 할 태도도 제 중심을 지키면서 상대의 뜻을 온전히 들어주는, 마치 차가운데 따뜻한 그런, 제가 감히 갖추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태도겠지요? 저도 그렇게 전문성과 인간성을 갖춘 법조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가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양식을 모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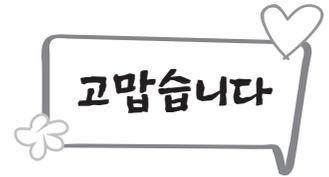
확실히 가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다른 분야의 사건보다 양식이 단순하고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법률적인 사항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75세 할머니의 개명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며, 간단하게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대신 써드렸는데, 그분이 개명할 이름의 한자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미리 고쳐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단 하지만 낯선 절차 하나가 그분의 20년, 30년의 인생에 줄 작은 영향을 생각하니, 제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자조 모임 라오니를 참관했습니다. 근래 가정폭력 사건에서 남성 행위자에 대응하는 여성 행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관한 모임도 여성 행위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시의 주제도 '의사소통'이었고, 갈등 상황에서 참가자분들이 갈등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의 대화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 그 활동지를 해보았는데, 그게 뭐라고, 그 잦은 갈등을 겪는 사람과의 대화를 몇 마디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상대에게 받았던 상처의 존재를 인정받게, 또 내 행동과 그 이유를 인정하게 만들어서,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폭력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특히 이런 상담의 효과를 오랫동안 불신해 왔는데, 이런 안전한 분위기의 모임 자체가 나의 일상에 주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변

화의 초석이자 단단한 도피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교과서 속 납작한 법리 사이에 입체적인 이야기를 끼워 넣어가면서, 이렇게 또 한 발 나아간 만큼, 언젠가는 좋은 법조인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남성숙, 이채린, 주예진, 최지연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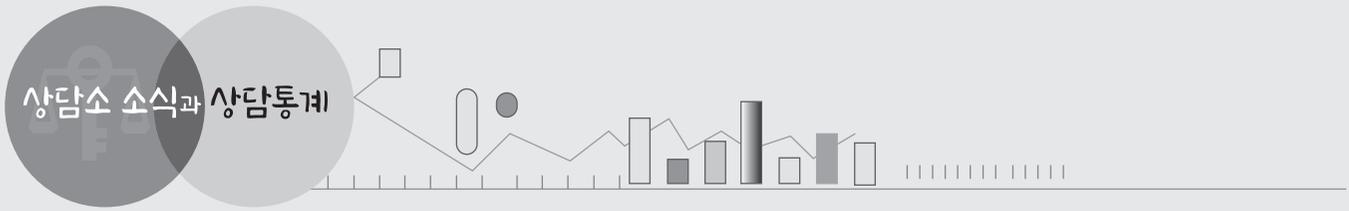
최문원, 이현혜,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상담소, 광배희 소장 국민주권 대축제 및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국민대표로 참석

‘호주제폐지 및 가정 내 민주화에 앞장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으로

본소 광배희 소장은 지난 8월 15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에 국민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 함께 찾은 빛’을 통해 광복 8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온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2부) 빛의 바람’은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국민의례’, ‘주제 영상 상영’,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임명식’, ‘빛을 밝혀라’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임명식과 감사인사 이후 ‘(3부) 빛나는 우리’는 광복 80년 및 국민임명식을 축하하며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마당이 되었다.

광배희 소장은 국민임명식에 국민대표 80인 가운데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에게 ‘법률구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직접 작성한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국민대표 80인은 광복동맹과 한국전쟁,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는 인물들과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선정되었다.

광배희 소장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가족관계등록법’과 관련하여 ‘호주제폐지 및 가정 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으로서 광복 80년의 역사를 빛낸 국민대표로 선정되어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본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 진행

- 새내기 직원 대상 제2기 청렴 루키 임명식 진행
- 어린이 청렴 나무 꾸밈판 제작
- 청렴 명언판 제작
- 유행 밈 활용 청렴 스티커 제작
- 청렴 문구 공모전 개최

상담소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기관장 주도 하에 청렴 정책 관련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구성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다양한 청렴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8월 1일에는 새내기 직원 대상으로 제2기 청렴 루키 임명식을 진행하였다. 임명된 청렴 루키는 선기수 청렴 루키 및 자원봉사 학생들과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어린이 청렴 나무 꾸밈판’, ‘청렴 명언판’, ‘유행 밈 활용한 청렴 스티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실제로 제작을 거쳐 게시까지 완료하였다.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구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
부패를 끊고, 신뢰를 잇다

- [우수상]
1. 받으면 마음의 빛, 안 받으면 마음의 빛
 2. 청렴한 우리, 신뢰받는 우리
 3. 청렴의 씨앗, 더 나은 내일을 꽃피운다.

4. 스며드는 청탁, 부패의 시작

[참가상]

1. 청렴실천, 밝은 미래, 청렴 공정 한국
2. 근절, 거절 부정부패 / 투명, 정직 청렴 공정
3. 청렴한 한걸음 국민에게는 큰 희망
4. 청렴으로 시작해 신뢰로 완성한다.
5. 투명한 선택, 깨끗한 내일
6. 청렴은 공짜, 신뢰는 덤
7. 청렴만복래
8. 청렴환영! 청탁사절!
9. 청렴은 초록불, Go! 청탁은 빨간불, stop!
10. 받으면 세상 불안, 안 받으면 세상 떳떳!
11. 받는 순간 불안 시작,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12.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나의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13. 우리의 청렴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됩니다.
14. 부패 NO!, 청렴 OK!
15. 밝은 내일의 첫걸음, 청렴이 시작입니다!
16. 밝은 내일을 위해 나부터 청렴!
17. 당당하게 청렴해요.
18. 상처에는 소독약, 부패에는 청렴의식
19. 청렴하게, 떳떳하게, 자신있게!
20. 모든 가정의 수만큼, 청렴한 답을 드립니다.
21. 청렴하게 듣고, 공정하게 답합니다.
22. 절차는 청렴하게, 상담은 공정하게
23. 청렴있는 오늘, 정념없는 내일
24. 청렴은 신뢰의 뿌리, 부패는 불신의 시작
25. 오늘의 청렴이 내일의 믿음을 만든다
26. 내가 지키는 청렴, 모두가 웃는 내일
27. 청렴의 빛, 반딧불이처럼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28. 청렴, 변하지 않는 내일의 가치
29. 청렴 위에 꽃피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30. 청탁 ZERO 세상, 청렴합니다!
31.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렴한 사회를 볼 것이요.

32. 절망의 선택 부패, 희망의 선택 청렴

33. 기브 미 청렴! 테이크 노 부패!

상담소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청렴 관련 행사를 진행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약속하고 생활 속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구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태 현장점검차 방문

지난 8월 26일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양성평등팀 김성혜 주무관과 어은서 주무관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하기 위해 본소를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및 차연실 상담위원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서 시설 환경 및 안전, 종사자 자격 및 관리, 예산집행 현황, 사업실적 통계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항목별로 점검하였다. 본소를 방문한 영등포구청 담당부서 실무진은 충분하지 않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본소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했다.

동지교실 -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관계 회복

가족의 정신 건강과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동지교실’ 이 지난 8월 13일 본소 강당에서 열렸다. 인하대학교 황순찬 교수가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성격장애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강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정한 자존감과 과민성으로 채워져 있다”며, 인정 욕구와 공감 부족이 반복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특히 결혼생활에서 관계 만족도를 크게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애적 성향을 외현형(과시적·특권 의식)과 내현형(겉은 겸손하지만 내면의 우월욕구)으로 구분하며, △유아기 애착 실패 △공감 부족한 양육 △과잉보호·방임 △경쟁적 사회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치료에 대해서는 단기간 변화가 어렵기에 장기적이고 공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 경험을 통해 건강한 자아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은 상대 변화에 집착하기보다 자기 돌봄과 분명한 경계 설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강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닌 발달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는 자기 보호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다음 「등지교실」은 오는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2025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법교육

본소의 2025년 하반기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봉사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법교육이 2025년 8월 21일에 오전, 오후 2회 진행되었다. 법교육은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와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교육으로 98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지원자들이 참여하였고 조은경 상담위원이 강의하였다.

교육을 마친 후 자원봉사자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작년에 처음 알게 되었다. 단순히 가정 문제를 상담해주는 기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소송서류 작성, 소송구조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난 70년 동안 가족법 개정 운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봉사’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와닿게 해주셨다.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해야겠다. 가사사건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아서 기관설립과 기관의 목적 취지를 잘 이해해야겠다.’, ‘법률이 단순히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약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상이 깊다. 법률 복지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기관이라 생각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족 양상의 변화에 맞춰 가족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가부장제가 심했던 역사를 고려했을 때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음이 뜻깊고, 봉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설립 목적이 인상 깊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현재는 영어 상담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 가족구성원 모두에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족의 평화를 도모하는, 상담 외에도 법 교육, 법 개정 운동, 홍보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년 반 정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상담소 선생님들이 법률구조 및 상담소의 역할에 대해 갖고 계신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고, 미약하지만 봉사자로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앞으로도 상담소의 목적과 역사를 잊지 않고 열심히 봉사에 임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봉사를 하면서 느꼈지만,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상담소는 최대한 그러한 사람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어서 봉사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많이 배운다.’ 등의 기관에 대한 소감을 남겼다.

상담소와 업무협약 사례, 대검찰청의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

2023년 말, 본소와 대검찰청 업무협약 맺어

대검찰청이 발표한 7월 전국 일선 검사 공판우수사례 5건 가운데 상담소와 업무협력을 통해 진행 중인 서울 남부지검 공판부 사건이 공판 우수사례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남부지검은 존속살해와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교사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징역 30년 선고를 끌어냈다고 대검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수십억 원 자산을 가진 부친의 재산을 피의자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상속결격등기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본소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대검찰청과 범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익소송협업체계 구축은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의뢰받아 본소에서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협약에 따라 대검찰청과 본소는 형사 사건에 수반된 가사관련 사건에 대해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 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여름방학 대학생 현장실습

7.1. - 8.31.(이화여대) - 정다현

8.1. - 8.29.(동국대) - 권수민, 김산하, 백선하, 이승렬, 장민정, 정지민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박채영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8월 6일과 27일 상담소 8층 회의실에서 한화손해보험 통합마케팅 파트 김지연 파트장, 조은숙·곽소은 과장, 강지혜 대리 등과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조은경 상담위원이 같이 참석하였다. 8월13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 조정을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8월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사건을 조정하였고, 28일에는 이혼 사건을 조정하였다.

2025년 8월 상담통계

총 건수 4,611		
법률상담 (3,940)		
면접	전화	인터넷
1,135	2,616	189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35	33	103

• 인터넷 정보 이용 106,576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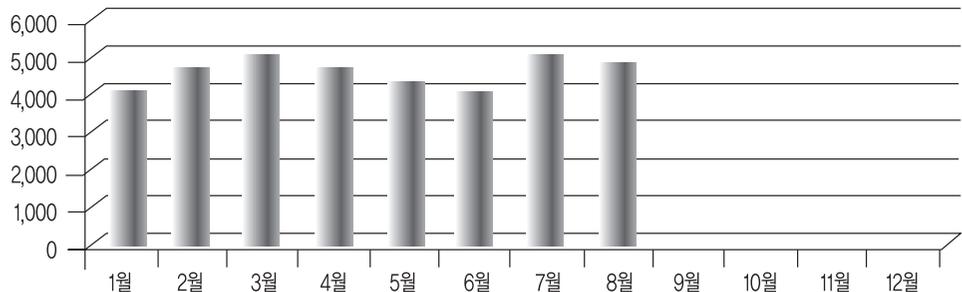
2025년 8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611건이었다. 상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940건(85.4%), 화해조정 535건(11.6%), 소장 등 서류작성 33건(0.7%), 소송구조 103건(2.2%)이었다.

법률상담 3,94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5년 7월에 비해 이혼(33.5%→37.1%), 사실혼해소(0.4%→0.6%), 친권·양육권(4.9%→5.1%), 부양(0.6%→0.7%),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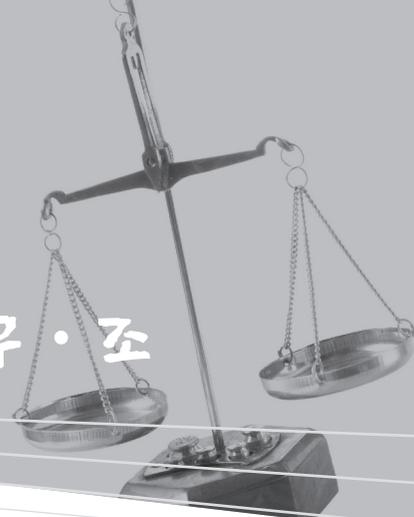
관계등록부(1.8%→3.0%), 친양자(0.3%→0.4%), 성변경(0.9%→1.1%), 미성년후견(1.5%→1.7%), 성년후견(2.2%→2.3%), 민사기타(1.0%→1.5%), 민사절차(0.1%→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94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35건(28.8%), 전화상담 2,616건(66.4%), 인터넷상담 189건(4.8%)이었다.

2025년
월별
총건수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를 폭행하고 아동학대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4-1-5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50대)는 2009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 본인 1, 2(각 남, 10대), 사건본인 3, 4(각 여, 10세 이하)를 두고 있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어릴 때부터 술에 취하여 원고나 사건본인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였다. 원고는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8차례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는 2022년 9월경 사건본인 2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되어 2023년 2월 접근금지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집에 찾아와 수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혐의로 다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이후 2023년 3월 보호처분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사건본인 2, 3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정내 폭력상황 노출로 인한 우울감 및 불안증상 등의 문제로 상담 및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6월경 다른 여성과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 접촉으로 보일 만한 자세로 사진을 찍은 바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8.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5.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피고는 별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청구를 위한 양육비채권 소멸시효 중단 확인

법률구조 2025-1-113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1999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14년 8월 이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년 8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인당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양육비가 1억 원에 달하였다. 원고는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2025. 8. 1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5년 9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시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8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6년 7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우리 가족 행복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26년 7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